

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 60

제출년월일 : 2003.
제출자 : 달성군의회


1. 개정이유

당직근무수당은 매년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,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, 당직시설상태,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당직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제4항).

3.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- 관계법령 :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(행정자치부 재정과 842호,
2003. 7. 24)
- 예산조치 : 당직근무수당 인상분에 대하여 2004년 추경예산에 편성
(추가 소요액 81,395천원 정도-본청, 사업소, 읍·면 포함)
- 입법예고 : 생략(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없음)

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</p> <p>① ~ ③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④(생략)</p>	<p>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</p> <p>① ~ 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⑤(현행과 같음)</p>